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14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13년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상위법령 근거 불일치 조항 삭제 등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시설이 부적합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항 삭제(안 제17조)

나.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현실화 함.

(안 제10조 관련 별표 3)

- 1) 기본부과금액 : 20,350원 → 22,500원
- 2) 초과부과금액 : 1,540원 → 1,800원
- 3) 공휴일할증 신설 : 7%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 제41조(분뇨처리 의무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0. 9. 3. ~ 9. 2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6) 제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10.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삭제하고,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청소한 개인하수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

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
부과기준(제10조제1항 관련)

구 분	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 고
분 뇨	기 본	400ℓ	10,000원	
	초 과	10ℓ당	150원	
개인하수 처리시설	기 본	0.75m ³	22,500원	
	초 과	0.1m ³ 당	1,800원	
	지하 할증	정화조청소요금	7.0%	
	야간 할증	정화조청소요금	7.0%	
	공휴일 할증	정화조청소요금	7.0%	

- 비고 : 1. 정화조 지하할증 요금은 흡인식 차량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 시 제외
 2. 야간청소시간은 22:00부터 익일 04:00까지로 한다.
 3. 공휴일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.
 4. 지하·야간·공휴일 할증 시 각각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u>제17조(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의무)</u></p> <p>① <u>분뇨수집·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분뇨수집·운반업자는 매월 청소 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[별표 3]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(제10조제1항 관련) 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부과기준</th> <th>부과금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분 뇨</td> <td>기 본</td> <td>400ℓ</td> <td>10,000</td> </tr> <tr> <td>초 과</td> <td>10ℓ</td> <td>15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개인하수처리시설</td> <td>기 본</td> <td>0.75㎡</td> <td>20,350</td> </tr> <tr> <td>초 과</td> <td>0.1㎡당</td> <td>1,540</td> </tr> <tr> <td>지하 할증</td> <td>정화조 청소요금</td> <td>7.0%</td> </tr> <tr> <td>야간 할증</td> <td>정화조 청소요금</td> <td>7.0%</td> </tr> <tr> <td><신설></td> <td><신설></td> <td><신설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. 정화조 지하할증 요금은 흡인식 차량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 시 제외 2. 야간청소시간은 22:00부터 익일 04:00까지로 한다.</p>	구 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분 뇨	기 본	400ℓ	10,000	초 과	10ℓ	150	개인하수처리시설	기 본	0.75㎡	20,350	초 과	0.1㎡당	1,540	지하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	야간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	<신설>	<신설>	<신설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>[별표 3]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(제10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부과기준</th> <th>부과금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분 뇨</td> <td>기 본</td> <td>400ℓ</td> <td>10,000원</td> </tr> <tr> <td>초 과</td> <td>10ℓ</td> <td>150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개인하수처리시설</td> <td>기 본</td> <td>0.75㎡</td> <td>22,500원</td> </tr> <tr> <td>초 과</td> <td>0.1㎡당</td> <td>1,800원</td> </tr> <tr> <td>지하 할증</td> <td>정화조 청소요금</td> <td>7.0%</td> </tr> <tr> <td>야간 할증</td> <td>정화조 청소요금</td> <td>7.0%</td> </tr> <tr> <td>공휴일 할증</td> <td>정화조 청소요금</td> <td>7.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~2. (현행과 같음) 3. 공휴일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. 4. 지하·야간·공휴일 할증 시 각각 적용한다.</p>	구 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분 뇨	기 본	400ℓ	10,000원	초 과	10ℓ	150원	개인하수처리시설	기 본	0.75㎡	22,500원	초 과	0.1㎡당	1,800원	지하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	야간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	공휴일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
구 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 뇨	기 본	400ℓ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 과	10ℓ	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인하수처리시설	기 본	0.75㎡	20,3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 과	0.1㎡당	1,5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하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야간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신설>	<신설>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 뇨	기 본	400ℓ	1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 과	10ℓ	15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인하수처리시설	기 본	0.75㎡	22,5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 과	0.1㎡당	1,8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하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야간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공휴일 할증	정화조 청소요금	7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제1호에 해당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도시환경국 환경과 배금임 (☎ 3153-9265)